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 결핵검진 비용 지원》

■ 김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089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1. 개정안의 내용	2
------------------	---

2. 주요 검토사항	4
------------------	---

※ 참고자료

1. 질병관리청 검진 의무기관 종사자 검사 비용 추계	9
-------------------------------------	---

I. 개요

1. 김민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08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민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4. 24.
- (3) 회 부 일 : 2025. 4.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부랑인·노숙인·미신고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음.

그런데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학교 등의 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핵검진에 대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결핵검진이 해당 기관 또는 학교에서 잘 실시되고 있지 않음.

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호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 및 교직원이 행한 결핵검진등에 드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호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제26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 ----- ----- ----- -----.
1. 2. (생략) <u><신설></u>	1.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실시</u> 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② (생략) <u><신설></u>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국가는 제26조제2호의2에</u>

	<u>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u> <u>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u> <u>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u>
--	---

2. 주요 검토사항

- 현행 「결핵예방법」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제11조제2항)하면서, 그 경비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서 부담하도록 함(제26조제2호).
- 반면, 의료기관의 장·학교의 장 등에 대해서는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¹⁾을 실시하도록 의무화(제11조제1항 본문)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핵검진 실시 비용부담의 주체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바, 이 경우 검진비용은 기관·학교의 사정에 따라 종사자 또는 기관장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 실시 의무 부과 대상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학교 등의 장 |
|---|

- 참고로 이에 따른 결핵검진 실시 의무기관은 약 13만개소이며, 종사자는 약 167만명에 이릅니다.

1)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포함함(「결핵예방법」 제10조제1항).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검진의무기관 현황 >

검진 의무 대상	시설(개소)	종사자(명)	자료원
계	127,588	1,667,447	-
의료기관	73,750	827,998	2024 보건복지통계연보 (‘24.12.27. 기준,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460	10,105*	2024 산후조리원 현황 (‘24.12.31. 기준, 보건복지부)
학교	12,120	453,838	2024년 교육기본통계 (‘24.4.1. 기준, 교육부)
유치원	8,294	55,404	2024년 교육기본통계 (‘24.4.1. 기준, 교육부)
어린이집	27,387	297,067	2024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24.12.31. 기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5,577	23,035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23.8.24. 기준, 보건복지부)

*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기타(미화원, 마사지사 등 포함) 등을 모두 포함한 통계이며, 조사 시기에 따라 종사자 수 변동 가능

** 자료: 질병관리청

□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 등이 행한 결핵검진 등에 소요된 경비를 공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2위에 해당하는 높은 결핵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의 결핵예방 및 조기발견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우리나라 결핵환자 신고 현황 >

구분	’11년	...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환자수 (명)	50,491	...	30,304	25,350	22,904	20,383	19,540	17,944
환자율 (명/10 ⁵)	100.8	...	59.0	49.4	44.6	39.8	38.2	35.2

* 자료출처: 『2024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 (질병관리청, 2025.3월)

□ 한편, 질병관리청에서는 2024년에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및 아동 복지시설 등 총 44,189개소를 대상으로 검진의무 이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결핵에 대해서는 88.7%, 잠복결핵감염에 대해서는 93.2%가 검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20년에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는 결핵에 대해서는 95.3%, 잠복결핵감염에 대해서는 93.4%가 검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검진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결핵검진 이행을 제고를 위해 개정안과 같이 공적 지원 방안 외에 행정지도 강화 등의 대안은 없는지 검토도 있어야 하겠음.

< 검진의무기관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조사 현황 >

분류		2020년	2024년
조사기간		'20.11월~'21.1월	'24.4월~'24.9월
조사범위		▲결핵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결핵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조사대상 기관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의무검진 기관 중 신생아 및 영아 돌봄시설 *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의무검진 기관 중 '20년 조사 대상기관 제외 *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대상기관 수 (A)		38,482개소	98,103개소
조사 응답 기관 수 (B, (B/A))		34,563개소 (89.8%)	44,189개소 (45.0%)
조 사 결 과	결핵, 잠복결핵감염 검진 모두 이행 (C, C/B)	31,126개소 (90.1%)	38,082개소 (86.2%)
	검진 일부 이행		
	결핵 (D, (D/B))	32,945개소 (95.3%)	39,206개소 (88.7%)
	잠복결핵감염 (E, (E/B))	32,268개소 (93.4%)	41,200개소 (93.2%)

* 자료: 질병관리청

□ 그 외 시·군·구 등의 경비 부담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현행법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기관의 종사자 등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의 규모나 영리성 여부에 따라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는 있겠음.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지원 비율에 따라 연평균 66억원에서 1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 제26조제2호의2 및 제28조제3항 (결핵의무검진 소요비용 지원)	50% 지원	6,195	6,396	6,604	6,918	7,039	33,052	6,610
	75% 지원	9,292	9,594	9,905	10,227	10,559	49,577	9,915
	100% 지원	12,389	12,792	13,207	13,636	14,079	66,103	13,221

* 자료: 질병관리청(국회예산정책처 추계방식에 따른 추계)

□ 개정안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결핵 조기발견 및 전파방지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검진의무기관에 결핵검진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안 제26조제2호의2를 제26조제2항으로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함.

또한 개정안에 따른 소요 예산은 최대 14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참고 1]하고 있으며, 그 중 지원 대상 조건 또는 일부 지원에 따라 소요 예산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임.

< 관련 부처 및 단체 의견 >

구분	제시 의견
기획재정부	- 결핵 검사는 사업장과 종사자 등의 보건 환경 유지를 위한 것인 만큼 고용주 자부담이 바람직함.
대한병원 협회	- 결핵 감염 위험에 항시 노출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고, 결핵 조기 발견 및 전파 방지 등을 위하여 검진 비용 지원이 필요함.
대한의사 협회	- 검진 의무기관의 부담 완화와 검진대상자의 적극적인 수검 환경 조성으로 국가 결핵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임.

문 의 처

02) 6788-5501

참고 1

질병관리청 검진의무기관 종사자 검사 비용 추계

< '25. 7. 15. 기준 >

[전체 종사자: 199만명]

총 검사비: 약 142억원

- 결핵: 90억원

=199만명×50%(격년)×8,990원

- 잠복결핵감염: 52억원

=199만명×5%(신규입직)×52,690원

[통계 종사자: 167만명]

총 검사비: 약 119억원

- 결핵: 75억원

=167만명×50%(격년)×8,990원

- 잠복결핵감염: 44억원

=167만명×5%(신규입직)×52,690원

[기타임시일용직 종사자: 32만명]

총 검사비: 약 23억원

- 결핵: 14.5억원

=32만명×50%(격년)×8,990원

- 잠복결핵감염: 8.5억원

=32만명×5%(신규입직)×52,690원

(단위: 명, 백만원)

검진 대상	기관 (개)	종사자수 (명)			검사비용 추계 ^③					
					전체		통계 종사자		기타 임시일용직	
		전체 종사자	통계 종사자 ^①	기타 종사자 임시일용직 ^②	결핵	잠복 결핵	결핵	잠복 결핵	결핵	잠복 결핵
					50% ^④	5% ^⑤	50% ^④	5% ^⑤	50% ^④	5% ^⑤
소계					14,189		11,888		2,301	
계	127,588	1,990,132	1,667,447	322,685	8,946	5,243	7,495	4,393	1,450	850
의료기관	73,750	952,198	827,998	124,200	4,280	2,509	3,722	2,181	558	327
산후조리원	460	11,621	10,105	1,516	52	31	45	27	7	4
학교	12,120	562,759	453,838	108,921	2,530	1,483	2,040	1,196	490	287
유치원	8,294	68,701	55,404	13,297	309	181	249	146	60	35
어린이집	27,387	368,363	297,067	71,296	1,656	970	1,335	783	320	188
아동 복지시설	5,577	26,490	23,035	3,455	119	70	104	61	16	9

① 통계연보 등을 통한 기관별 종사자수. 보건복지부·교육부

② 임시일용직근로자 및 기타종사자 추가(보건·사회복지15%·교육24%적용).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③ 결핵: 흉부 X선 검사 8,990원, 잠복결핵감염: IGRA 검사 52,690원('25년 의원급 기준 단가)

④ 국가건강검진으로 결핵검사를 격년 주기로 갈음하는 것을 고려하여 50%계산

⑤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소속기간 중 1회 실시하도록 명시되어있어 산업전체 입직률5.3%적용(교육: 2.3%, 보건·사회복지: 3.6%보다 과다적용)